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 (2022. 12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 국 모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124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5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(금)

2. 제출사유

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
- 나.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·시행 의무조항 내용 변경
- 다.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(용어 변경)
- 라. 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및 관련 조항 삭제
- 마.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

4. 관계법령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상위법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규정
(안 제1조 ~제3조)
 -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
(안 제5조~제8조)
 -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 -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(안 제10조)
 - 구민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 규정(안 제11조~12조)
 -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(안 제14조~제15조)
- 조례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48개의 조문 중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15개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, 현행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의 관련법으로 대체하여 간결하게 정비하고 있음은 자치법규 입법의 좋은 사례로 보임.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7조에서는 분야별 지능 정보화의 추진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간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리고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그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(안 제9조), 현대 디지털 사회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사회 구성원간,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음(안 제10조)
- 그 밖에 현행 제6장 정보화교육 및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이 구민 정보화 교육과 수강료의 징수(안 제11조~제13조) 및 구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문(안 제 제14조~제15조)으로 개정되었으며 검토 결과 이 조례 전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지능정보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,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계부서의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.